

# 공 보

**제608호 2017. 8. 30.(수)**

선 결	기관의 장

## 훈 령

- 거창군 훈령 제413호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3
- 거창군 훈령 제414호 거창군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9
- 거창군 훈령 제415호 거창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13

## 고 시

- 거창군 고시 제2017-106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고시 ..... 19
- 거창군 고시 제2017-107호 월성계곡 군립공원 공원구역(변경), 공원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
- 거창군 고시 제2017-108호 도로명주소 고시 ..... 24

##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17 - 944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고문 ..... 26
-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7-18호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36
-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7-19호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50
-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7-20호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64

회 감									
--------	--	--	--	--	--	--	--	--	--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8월 30일

거창군 훈령 제413호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상공”을 “일자리총괄”로 한다.

별표 중 “경제교통과”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본청 실·과에 두는 담당은 다음과 같다.</p> <p>1~7. (생략)</p> <p>8. 경제교통과에 지역공동체, <u>상공</u>, 에너지, 교통담당을 둔다.</p> <p>9~10. (생략)</p>	<p>제3조(구성) ① ----- -----</p> <p>1~7. (현행과 같음)</p> <p>8. -----<u>일자리총괄</u> -----</p> <p>9~10. (현행과 같음)</p>

[별표] (제8조 관련)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경 제 교 통 과	지역공동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li> <li>2.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li> <li>3.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총괄기획</li> <li>4.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li> <li>5. 인증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li> <li><del>6. 사회적일자리사업 추진</del></li> <li><u>6.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운영</u></li> <li><del>8. 지역일자리공사제 시행</del></li> <li><u>7. 노정, 노동단체 지도 및 관리</u></li> <li><u>8. 저축 및 금융기관 지도, 감독</u></li> <li><u>9. 대부업 관리</u></li> <li><u>10. 새마을금고의 설립·합병·정관변경 인가, 설립인가의 취소</u></li> <li><u>11.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u></li> <li><u>12. 새마을금고 지역사회공헌사업 관리</u></li> <li><del>15. 고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del></li> <li><del>16.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del></li> <li><del>17. 실업대책 추진</del></li> <li><del>18. 자체 일자리사업 발굴·추진</del></li> <li><del>19. 청년일자리창출 사업</del></li> <li><del>20. 취업박람회 개최</del></li> <li><del>21.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del></li> <li><u>13. 직업소개소 운영</u></li> <li><del>23.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사업</del></li> <li><del>24.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del></li> <li><del>25. 취업상담사 운영</del></li> <li><del>26. 농산업 인력관리 업무 추진</del></li> <li><del>27.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del></li> <li><del>28. 지역일자리센터 운영</del></li> <li><del>29. 구안·구직등록 관리</del></li> <li><del>30. 공공·희망 근로사업 추진</del></li> <li><del>3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del></li> <li><u>14. 마을기업 지원사업 추진</u></li> <li><del>3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del></li> <li><u>15. 상공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u></li> <li><u>16. 전통시장 육성 및 관리</u></li> <li><u>17. 시장거리 유지 및 관리</u></li> <li><u>18.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업무</u></li> <li><u>19. 공산품 품질표시 지도 및 점검</u></li> <li><u>20. 물가 종합대책 수립 및 지도</u></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21. 공예품 육성 및 QC상품 관리</u></li> <li><u>22. 계량기 검사 및 단속</u></li> </ol>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p>일자리총괄 &lt;신 설&gt;</p>	<p>23. 담배판매업 신고 및 지도·감독  24. 전시 산업자원 동원 실시계획 수립·시행  25. 통신·방문·전화권유 등 특수판매업 신고수리  26. 통상진흥 업무 추진  27. 공산품 등 판로개척 및 수출알선 지도  28. 대외무역업자 알선·관리 및 운영  29. 지역 공산품 마케팅 및 사이버 상거래 지원  30. 과내 일반사무 및 예산회계 업무</p> <p>31. 사회적일자리사업 추진  32. 지역일자리공시제 시행  33. 고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34.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35. 실업대책 추진  36. 자체 일자리사업 발굴·추진  37.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38. 취업박람회 개최  39.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40.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사업  41.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42. 취업상담사 운영  43. 농산업 인력관리 업무 추진  44.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45. 지역일자리센터 운영  46. 구인·구직등록 관리  47. 공공·희망 근로사업 추진  48.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4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p>
	<p>상——공</p>	<p><del>35. 상공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  36. 전통시장 육성 및 관리  37. 시장거리 유지 및 관리  38.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업무  39. 공산품 품질표시 지도 및 점검  40. 물가 종합대책 수립 및 지도  41. 공예품 육성 및 QC상품 관리  42. 계량기 검사 및 단속  43. 담배판매업 신고 및 지도·감독  44. 전시 산업자원 동원 실시계획 수립·시행  45. 통신·방문·전화권유 등 특수판매업 신고수리  46. 통상진흥 업무 추진  47. 공산품 등 판로개척 및 수출알선 지도  48. 대외무역업자 알선·관리 및 운영  49. 지역 공산품 마케팅 및 사이버 상거래 지원</del></p>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에 너 지	50.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 51. 에너지 자립도시 만들기 종합기획, 추진 52. 석유판매업 등록 및 지도점검 53. 가스시설 허가 및 지도점검 54. 신재생(청정) 에너지 보급 지원(육성) 55. 에너지 도시 자매결연 추진 56. 녹색발전소 및 에너지 자립마을 발굴 육성 57. 에너지 자립 실천운동 및 교육 58. 광업권 관리 및 지도·점검 59. 전기사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 60.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
	교 통	61.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6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체 지도·관리 63. 화물자동차 적재물 배상보험 관리 6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버스, 택시, 특수여객) 지도·관리 65.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지도·관리 66. 교통안전계획 수립 67.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68.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69.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 및 징수 70. 자동차관리사업체(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지도·관리 71. 자동차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72. 이륜자동차 관리 73.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 74. 무단방치 차량 처리 75. 전시교통실시계획 수립 시행 76. 여객터미널 관리 77. 여객운수사업체 재정 지원 78.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 79. 교통관련 사법업무 처리

#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의안 번호	2017~75
----------	---------

제출연월일	2017. 8. 16.
제 출 자	행정과장

## 1. 제안이유

새정부 일자리 업무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경제교통과에 일자리총괄 담당을 신설함에 따라 세부분장사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담당 신설(안 제3조제1항제8호, 별표)

- 일자리총괄담당 신설, 상공담당 폐지

### 나. 담당별 세부분장사무 변경·조정(안 별표)

- 상공담당 업무: 지역공동체담당으로 이관
- 일자리 관련 업무: 지역공동체담당 ⇒ 일자리총괄담당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8월 30일

거창군 훈령 제414호

거창군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경제과 일자리담당”을 “경제교통과 일자리총괄담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당일”을 “그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제5호 중 “3회”를 “세 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정의)</b>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3. (생 략)</p> <p>4. “상시고용인력센터”란 농가의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b>경제과 일자리 담당</b>에 설치한 전담반을 말한다.</p> <p><b>제7조(공공근로자의 근무수칙) ①</b> (생 략 )</p> <p>② 공공근로자는 근무활동을 종료한 후에도 근무활동 중에 취득한 공무상 또는 <b>타인</b>의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p> <p>③~④ (생 략)</p> <p><b>제8조(사업장 안전지도 및 감독의무) ①</b></p> <p>작업담당자는 작업 시작 전 <b>당일</b> 사업 목표량을 부여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업장 안전관리 요령도 교육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p> <p>② 작업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참여를 불허한다.</p> <p>1. 작업담당자나 작업반장이 판단하여 근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람</p> <p>2. 사전에 작업담당자나 작업반장에게 허락을 얻지 않은 지각이나 구체적 사유가 명확치 않은 조퇴가 <b>3회</b> 이상인 사람</p> <p>3. 작업담당자나 작업반장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하거나 배치받은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가 <b>3회</b> 이상인 사람</p> <p>4. 취중 출근자는 <b>당일</b> 출근을 금지하며 사업참여 배제</p> <p>5. 무단음주자는 적발시 즉시 귀가 조치 하고 <b>3회</b> 이상 적발 시 참여 불허</p> <p>③ (생 략)</p>	<p><b>제2조(정의)</b> ----- -----</p> <p>1.~3. (현행과 같음)</p> <p>4.----- -----<b>경제교통과 일자리 총괄담당</b>-----</p> <p><b>제7조(공공근로자의 근무수칙) ①</b> (현행과 같음)</p> <p>② ----- -----</p> <p><b>다른 사람</b>-----</p> <p>③~④ (현행과 같음)</p> <p><b>제8조(사업장 안전지도 및 감독의무) ①</b></p> <p>-----<b>그날</b>----- ----- ----- -----</p> <p>② ----- ----- -----</p> <p>1.----- -----</p> <p>2.----- ----- -----<b>세 번</b>-----</p> <p>3.----- ----- -----<b>세 번</b>-----</p> <p>4.-----<b>그날</b>----- -----</p> <p>5.----- -----<b>세 번</b>-----</p> <p>③ (현행과 같음)</p>

# 거창군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1. 제안이유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14. 8. 7.) 이후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음에도 별지 제2호서식(개인별 근로참여 기록부)에 표기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직개편사항 반영함(안 제2조제4호)

- 경제과 일자리담당 ⇒ 경제교통과 일자리총괄담당

###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순화함(안 제7조·제8조)

- 타인 ⇒ 다른 사람
- 당일 ⇒ 그날
- 3회 ⇒ 세 번

### 다.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안 별지 제2호서식)

## 3.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제1항(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별지 제2호서식]

### 개인별 근로참여기록부

○ 사업명:

○ 사업장:

년 월

근로참여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별	
성명	생년월일																																	
일 계																																		
근로확인자																																		

※ 근로확인자란은 사업장별 담당공무원이 일일근로참여자 를 확인 후 서명

거창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8월 30일

거창군 훈령 제415호

### 거창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로 한다.

제9조 중 “새주소업무 담당주사”를 “토지정보 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리부서의 장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

제19조제1항제1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4조”를 “제13조”로, “제37조”를 “제46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8조제1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제30조”를 “제37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1조”를 “제38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u>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u>」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와 「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군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국가공간정보 기본법</u>」 제35조----- ----- ----- -----</p>
<p>제9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거창군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u>새주소업무 담당주사</u>가 간사가 된다.</p>	<p>제9조(위원회 구성) ----- ----- ----- -----<u>토지정보 담당주사</u>----- -----</p>
<p>제14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생략) 1. <u>보안관리책임자 지정</u> 가. <u>본청 : 분임보안담당관</u> 나. <u>소속기관 : 소속기관의 장</u> 2.~6. (생략) ② (생략)</p>	<p>제14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1. <u>관리부서의 장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u> 2.~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① (생략) 1. 「<u>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25조에 따라 복제·관리하는 경우 2.~3. (생략) ②~④ (생략)</p>	<p>제19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① (생략) 1. 「<u>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u>」----- 2.~3.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p>
<p>제22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생략)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발간 또는 복제·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필</p>	<p>제22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제13조</u>----- ----- -----<u>제46조</u>-----</p>

<p>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2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생략)  1.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유출·침해·훼손·분실  2. 법 제30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훼손·불법 이용  3. 법 제31조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행위  4.~5. (생략)  ②~④ (생략)</p>	<p>-----</p> <p>제2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제35조제1항  -----  -----  2. --제37조-----  -----  3. --제38조-----  4.~5.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p>
--	---



[별지 제4호서식] (제17조제2항 관련)

##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신 청 인 신원사항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소속기관(단체)			직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대책						
제 공 내 역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기간	~	반납여부		반납일	
	보안대책					

본인은 20    년    월    일    위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목적 외에 사용시 아래에 규정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  
하겠습니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의 처벌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산출물 등의 양산시 환수 및 사용 금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 거창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1. 제안이유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등 현재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상위 관계법령의 제명 변경함(안 제1조, 제19조, 제28조)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나. 「거창군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명칭 개정(안 제9조)

- 새주소업무 담당주사 ⇒ 토지정보 담당주사

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조문 배열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28조, 별지 제4호서식)

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조문 배열 개정사항 반영(안 제22조)

## 3. 관계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 제37조 ~ 제41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 제46조
- 「거창군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농지조성 【오미자 재배】
2. 사업내역

위 치	사업시행면적(m <sup>2</sup> )		사 업 비	사업 예정기간	사업시행자	
	지 적	개간 승인면적			주 소	성 명
북상면 소정리 산3-5	6,680m <sup>2</sup>	<b>4,339m<sup>2</sup></b>	12,507천원	2017. 8. 24. ~ 2018. 8. 23.	경남 북상면 갈항재들길 87-18	임 종 권

3. 사업효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2】

2017년 8월 24일

# 거 창 군 수

# 1. 월성계곡 군립공원 공원구역(변경), 공원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공원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을 아래와 같이 결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0일

## 거 창 군 수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월성계곡 군립공원

2. 변경되는 공원구역의 위치 또는 범위

구분	행정구역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계	편입	제외		
공원구역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창선리, 산수리 일원	650,000	-	증) 151,030	감) 246,042	증) 95,012	650,000

### 3. 공원구역의 면적

#### 가. 공원구역의 결정(변경) 조서

구분	행정구역	면적(m <sup>2</sup> )					변경후	비고
		기정	증·감			구적 오차		
			계	편입	제외			
공원구역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창선리, 산수리 일원	650,000	-	증) 151,030	감) 246,042	증) 95,012	650,000	

#### 나. 세부변경내역

구분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해제 구역	소계	-	246,042	
	1구역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351-1번지 일원	150,294	
	2구역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983번지 일원	7,410	
	3구역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193번지 일원	5,896	
	4구역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246-3번지 일원	23,379	
	5구역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276번지 일원	59,063	
편입 구역	소계	-	151,030	
	6구역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280-1번지 일원	151,030	

#### 4. 공원구역의 변경사유와 그 근거 법령

##### 가. 구역변경의 사유

- 타당성평가 결과 반영
- ① 자연자원으로 보전가치가 낮고, 자연공원의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지역
- ② 지적경계선 기준을 원칙으로 해제하여 경계의 명확성 부여를 통한 점진적 자연자원훼손 억제
- ③ 공원경계로 인하여 부분 편입된 기 훼손지
- ④ 주민의견청취,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 나. 근거법령

- 자연공원법 제8조제1항제3호

#### 5. 공원구역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토지의 소유구분

##### 가. 공원구역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 해당없음

##### 나. 공원구역안의 토지의 소유구분

		면 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45,012	감) 95,012	650,000	최초지정면적 650,000m <sup>2</sup> (구적오차)
국·공유지	소 계	386,945	증) 72,655	459,600	
	국유지	138,624	감) 58,490	80,134	
	공유지	248,321	증) 131,145	379,466	
사유지		358,067	감) 167,667	190,400	

## 6. 용도지구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 가. 용도지구별 면적

	면 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650,000	650,000	
공원자연환경지구	-	증) 650,000	650,000	

### 나. 용도지구별 경계를 표시한 도면

- 관련도면 참고

## 7.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건폐율·높이 등 규모

- 해당없음

## 8.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 등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 9. 공원구역의 결정 및 변경연월일

- 최초지정일 : 2002.04.25.(거창군 고시 제2002-17호)

## 10. 공원관리청

- 거창군수 : 변경없음

## 11.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는 거창군 산림과(☎055-940-34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12. 지형도면고시 도면사항 : 게재생략

- 관련도면은 거창군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8. 30.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개화길 11 외 11건(부여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364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개화길 11	2009-04-01	2017-08-30	개화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63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265	2009-04-01	2017-08-30	거열로의 시작점에서 부터 네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306-3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계동길 171-28	2009-04-01	2017-08-30	거열산성 밑 계전 골짜기 동쪽에 자리 하므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4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하고리 517-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창길 77	2009-04-01	2017-08-30	하고리의 높은 재위에 있는 마을이라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667-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고척길 251-9	2009-04-01	2017-08-30	마을 근처에 금상옥척이라는 명당자리가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학리 857-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구례1길 24-27	2009-04-01	2017-08-30	구례길의 시작점으로 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845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덕거길 65	2009-04-01	2017-08-30	덕거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83-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1길 29	2009-04-01	2017-08-30	마을 북동쪽 모래독길 남쪽에서 아월천 서쪽일때까지의 논들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678-1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지내길 262-513	2009-12-28	2017-08-30	침녕쿨의 뿌리에 속한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1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67-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승강기길 47-12	2012-05-22	2017-08-30	승강기산업공장이 위치하는 길을 반영	
1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67-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승강기길 47-16	2012-05-22	2017-08-30	승강기산업공장이 위치하는 길을 반영	
1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17-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4길 17	2016-04-20	2017-08-30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경상남도가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 대상지역에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기업유치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우리군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남도의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 대상지역에 보조금을 2배 확대함에 따라 그에 맞춰 보조금 지원한도액 확대(제11조의 2 신설)  
※근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포상금 지급기준 구체화함(안 제22조제2항·제3항, 별표)
  - 지급상한액: 민간인 2억원, 공무원 2천만원

#### 4. 개정규칙안 : 붙임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입법예고 기간 : 2017. 8. 25. ~ 2017. 9. 14.(20일간)

#### 6.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담당부서 : 거창군청 기업지원과 **【☎ 055-940-3377, fax 940-3679】**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업지원과 투자유치담당 **【☎ 940-3377】**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규칙명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시설보조금)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경남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 대상지역 지원) ① 군수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원을 결정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기업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금 등의 지원규모를 2배의 범위에서 확대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차등지원 금액, 업종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22조에 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22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실제로 투자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유치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10조(시설보조금)  <u>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시설보조금의 지급 범위는 기업이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10조(시설보조금)  <u>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            -----            -----            -----</p> <p>제11조의2(경남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 대상지역 지원) )            ① 군수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원을 결정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기업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금 등의 지원규모를 2배의 범위에서 확대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차등지원 금액,업종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p>	<p>경남도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청기한 삭제</p>
<p>제22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도내 유치 금액이 건당 20억원 이상인 경우            2.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유치 금액이 건당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u>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투자유치기업이 군수와 입주계약 또는 투자유치협약 등을 체결한 이후에 행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22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① -----            -----            1. -----            -----            2. -----            -----            &lt;삭 제&gt;</p>	<p>지원대상 기업의 규모 제정</p> <p>포상금의 지급기준 신설로 민간인의 관심유도로 기업유치 활성화</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③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가점을 주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실제로 투자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p> <p>③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유치기업의 사업개시일 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 ----- ----- ----- ---</p>	

【별표】

##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

일반인(개인·단체·기관·기업 포함)

투자유치금액	지급기준율	상한액
20억원~100억원	투자금액×0.001	1,000만원
100억원~500억원	1,000만원+ (투자금액-100억원)×0.0004	2,600만원
500억원~1,000억원	2,500만원+ (투자금액-500억원)×0.0003	4,000만원
1,000억원 초과	5,000만원+ (투자금액-1,000억원)×0.0002	2억원

공무원

투자유치금액	지급기준율	상한액
20억원~100억원	투자금액×0.0002	200만원
100억원~500억원	200만원+ (투자금액-100억원)×0.00004	350만원
500억원~1,000억원	350만원+ (투자금액-500억원)×0.00003	500만원
1,000억원 초과	500만원+ (투자금액-1,000억원)×0.00002	2,000만원

※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 시는 원화로 환산한 금액임



##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협회 또는 단체명			전화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b>유치기업 현황</b>						
구분	기업명	소재지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제곱미터)	종업원수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현소재지						
이전지역						
<b>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b>						
계	부지매입비	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				
		건축비	공작물	기계설비	부속시설등	
<b>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b>						
성명	성별	소속	직위(직급)	기여도 (퍼센트)	기여내용	확인
	(남/여)					(인)
	(남/여)					(인)
	(남/여)					(인)
<p>「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p>						
<p>거창군수 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업무협약 사본 1부</li> <li>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li> <li>3. 실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li> <li>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li> <li>5. 그 밖의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li> </ol>						



## 관계법령

###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 대상지역 지원) ① 도지사는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 대상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역별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금 등의 지원규모를 2배의 범위에서 확대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차등지원 금액, 지역 및 업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조금의 지급범위는 기업이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개인이나 단체·기관·기업·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8호, 2017.4.18., 일부개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거창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가.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좋은 식단 실천사업, 관련 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지원 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함 (안 제4조)

라.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의 제한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4. 입법예고기간: 2017. 8. 25. ~ 2017. 8. 30.(5일간)

####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17. 8. 30.(수)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055)940-8063, FAX: 055)940-805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련 단체"란 중앙 또는 경상남도의 위생업소 협회(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동종 업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제1호 및 제2호의 관련 단체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옥·내외 메뉴판 등 시설개선 사업

2.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좋은 식단 실천사업
3.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외식문화 체험,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 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자의 주소 및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날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개인사업자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업소현황	업 소 명	사업자등록 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일반			
			휴대			
	건물소유 형 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기타				
	업 종 (업소명)	영업의 형태		“한식, 중식, 경양식 등”기재		
		업소주변 환경		“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		
이용객 수 (1일평균)	명	수 용 가능인원	명	주이용객	“내·외부인”기재	
지원요구	지원구분	일반(휴게)음식점 <input type="checkbox"/> 모범음식점 <input type="checkbox"/> 좋은식단 실천업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				
		공중위생업소 <input type="checkbox"/> 이·미용업소 <input type="checkbox"/> 숙박업소 <input type="checkbox"/> 목욕장업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시설개선사업 <input type="checkbox"/> 음식문화개선사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신청사유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p>「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p> <p>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신 청 인                                  (인)</p>						
<p>거창군수 귀하</p>						

[별지 제2호서식]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관련단체용)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단체현황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일반	
		휴대			
지원요구	지원사업				
	사업비	총사업비	원		
	신청사유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p>「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인) (대표자)</p> <p>거창군수 귀하</p>					

# 사 업 계 획 서

업 소 명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고유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남/여)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명 칭	수 량	합 계
합 계		

6. 기 타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 부 : 견적서 사본 1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7.5.19.] [대통령령 제27997호, 2017.4.18., 일부개정]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2016.1.22.>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나. 식품판매업
    -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5) 삭제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용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용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뚜껑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3.31., 2016.2.3.>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삭제 <2015.12.22.>
- ②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291호, 2016.12.2., 일부개정]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1.11.22., 2015.6.22., 2016.12.2.>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2의2. 「소금산업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3. 「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의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5의3.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

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는 임대인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이하 "임대점포"라 한다)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5.>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④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이하 "임대점포"라 한다)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5.>
- ⑤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 **[시행일 : 2017.12.3.]**

##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2.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고, 능력개발을 위한 적용 범위, 절차,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장애인공무원,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해당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 다.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4조)

- 라.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 마.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지원 내용 등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바. 장애인공무원의 지원방법은 군수가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4. 입법예고기간: 2017. 8. 25. ~ 2017. 8. 30.(5일간)

#### 5. 의견제출

- 가. 제출기간: 2017. 8. 30.(수)
-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라. 제출기관: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055)940-8063, FAX: 055)940-805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부.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거창군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경우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 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별로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장애인공무원은 군수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내용)**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수행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 운영 등)**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5.18.> [전문개정 2008.12.31.]

-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9.10.9.>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6.4.>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연수
  5.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6.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지원
  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관리, 홍보·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10.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
  11.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목개정 2009.10.9.]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10.19.] [법률 제14789호, 2017.4.18., 일부개정]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6.27.>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7.12., 2016.6.21., 2017.6.27.>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2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2014.6.30., 2017.6.27.>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7.12., 2016.6.21., 2017.6.27.>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2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7.8.9.] [법률 제14562호, 2017.2.8.,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22., 2015.6.22.>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8.9.] [대통령령 제28207호, 2017.7.24.,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개정 2014.6.30>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 1. 지체장애인(肢體障礙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礙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礙人)

-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礙人)

-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礙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礙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래인(自閉性障礙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礙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礙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

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9. 신장장애인(腎臟障礙人)

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10. 심장장애인(心臟障礙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礙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12. 간장애인(肝障礙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13. 안면장애인(顔面障礙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礙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礙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8.] [법률 제14461호, 2016.12.27., 일부개정]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거창군의회 의장

### 1. 자치법규명: 「거창군 건축조례」

### 2. 개정이유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정부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에 따른 과정에서 발생한 이행강제금의 비율 완화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줄여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중앙정부의 관련법 개정과 자치단체의 조례정비 등을 통해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국가정책으로 행·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사안임.

(소규모 및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2019년 3월 24일)



### 3. 주요내용

- 가. 무허가 축사의 이행강제금 한시적 완화(안 제42조의2제1항제3호)
  - 무허가 건축물 100분의 70 ⇒ 단, 무허가 축사인 경우 100분의 60 적용
  - ※ 한시적 적용 근거: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6호 규정  
⇒ 「가축분뇨법」 부칙(12516호, '14.3.24 및 환경부령 제599호, '15.3.25)
- 나.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사항 항목 추가(안 제42조의3제1항제2호)
  - 가설건축물 ⇒ 자진신고·천재지변·주민 공동소유 건축물 등 추가

### 4. 입법예고기간: 2017. 8. 25. ~ 2017. 8. 30.(5일간)

### 5. 의견제출

- 가. 제출기간: 2017. 8. 30.(수)
-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라. 제출기관: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055)940-8063, FAX: 055)940-805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거창군 건축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3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70(단, 영 제 115조의4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42조의3제2항**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로 한다.”를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단, 최초의 시정명령 전 위반사항 적법화를 위한 사전청원을 신청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3.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소유 및 이용시설과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경량구조의 관리사무소를 연면적 30㎡ 이하로 설치한 경우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경감 대상자 건축물
5.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와 경량철골, 파이프 구조 등 건축 구조가 경미한 구조로 벽이 없는 건축물인 경우
6. 가설건축물인 경우
7. 기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화장실, 보일러실, 계단, 노약자 편의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8.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2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li> <li>2.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li> <li>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70</li> </ol> <p>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p>	<p>제42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 ----- ----- 1.----- ----- 2.----- ----- 3.----- ----- <u>(단, 영 제115조의4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u> 4.----- -----</p>
<p>제42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 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으로 한다.</p> <p>② <u>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로 한다.</u></p>	<p>제42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u>위반행위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단, 최초의 시정명령 전 위반사항 적법화를 위한 사전청원을 신청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u></li> <li>2.<u>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후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u></li> <li>3.<u>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소유 및 이용시설과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 건축물에 대하여 경량구조의 관리사무</u></li> </ol>

<p>③ (생략)</p>	<p> <u>소를 연면적 30m<sup>2</sup> 이하로 설치한 경우</u>  <u>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과태료 경감 대상자 건축물</u>  <u>5.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와 경량철골, 파이프 구조 등 건축 구조가 경미한 구조로 벽이 없는 건축물인 경우</u>  <u>6.가설건축물인 경우</u>  <u>7.기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화장실, 보일러실, 계단, 노약자 편의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u>  <u>8.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u> </p> <p>③ (현행과 같음)</p>
---------------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35호, 2017.1.17. 일부개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8.11.>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8.11.>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8.11.]



##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2.11.]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 [본조신설 2016.2.11.]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1.>
-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4.3.24.]

### 부 칙 <법률 제12516호, 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1조제1호의 개정규정과 제48조제1호·제6호, 제49조제2호·제4호·제5호·제10호, 제50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9호·제11호, 제51조제2호·제5호 및 제52조의 개정규정 중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16호·제17호,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51조제9호 및 제53조제3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종전의 공동처리시설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에 따른 공동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공동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위승계에 따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 규정(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그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리시설의 준공검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치가 완료되는 처리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하여 운영 중인 처리시설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계·시공하는 처리시설부터 적용한다.

제6조(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조치명령·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배출·수집·운반 또는 처리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자는 제37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간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또는 처리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와 다른 특례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지역에 존재할 것
2. 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배출시설이 이 법(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

**제9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

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4년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3년

② 제1항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 동안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위탁사육하는 자는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2019년 3월 24일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2018년 3월 24일

[본조신설 2015.12.1.]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3.25.] [환경부령 제599호, 2015.3.25., 일부개정]

부 칙 <제599호, 2015.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 제39조의3, 별표 7 제2호다목제16호·제17호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제5호 및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이란 신축 또는 증축·개축된 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돼지 사육시설: 400㎡ 이상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시설
2. 소·젓소·말 사육시설: 400㎡ 이상 5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시설
3. 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 600㎡ 이상 1,0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이상 500㎡ 미만)의 사육시설
4. 양·사슴·개 사육시설: 100㎡ 이상 2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이상 100㎡ 미만)의 사육시설

② 법 부칙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신축 또는 증축·개축된 배출시설을 포함한다)과 기한을 말한다.

1. 4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미만)의 돼지·소·젓소·말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2.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미만)의 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3. 그 밖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1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미만)의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86호, 2017.6.2., 일부개정]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09.12.15.]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일 것
  2.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개정 2015.8.11.>[본조신설 2012.12.18.]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 「주택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44호, 2016.1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93호, 2017.4.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8., 2015.12.29., 2016.1.19., 2017.4.18.>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공고 제2017-21호

##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2017년 9월 5일(화) 10:00
2. 집회장소: 거창군의회 본회의장

2017년 8월 30일

거창군의회 의장 김 종 두